

자양3동 A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, 지구단위계획(구역) 결정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26-335호(2026.06.11.)로 고시된 자양동 227-147번지 일대(이하 '자양3동 A구역')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지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내용 중 착오로 인한 오기사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(이하 '도시정비법') 제16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 제11조 규정에 따라 정정 고시하며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6년 06월 18일

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

1. 정비사업 명칭 : 자양3동 A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
2. 정정사유 : 착오에 의한 오기
3. 정정내용 : 정비계획 결정사항, 토지이용계획 명칭부분 정정

1) 기 정 (토지이용계획)

구 분	명 칭	면적(㎡)			비율(%)	비 고
		기정	변경	변경후		
합계		-	증) 40,798.0	40,798.0	100.0	-
정비기반 시설 등	소 계	-	증) 6,649.0	6,649.0	16.2	-
	도 로	-	증) 2,004.0	2,004.0	4.9	-
	공 원1	-	증) 3,445.0	3,445.0	8.4	공영주차장 중복결정
	공 원2	-	증) 800.0	800.0	1.9	119안전센터
	공 원3	-	증) 400.0	400.0	1.0	노인복지시설
획지	소 계	-	증) 34,149.0	34,149.0	83.8	-
	획 지1	-	증) 34,149.0	34,149.0	83.8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

2) 정 정 (토지이용계획)

구 분	명 칭	면적(㎡)			비율(%)	비 고
		기정	변경	변경후		
합계		-	증) 40,798.0	40,798.0	100.0	-
정비기반 시설 등	소 계	-	증) 6,649.0	6,649.0	16.2	-
	도 로	-	증) 2,004.0	2,004.0	4.9	-
	공 원	-	증) 3,445.0	3,445.0	8.4	공영주차장 중복결정
	공공청사	-	증) 800.0	800.0	1.9	119안전센터
	사회복지시설	-	증) 400.0	400.0	1.0	노인복지시설
획지	소 계	-	증) 34,149.0	34,149.0	83.8	-
	획 지1	-	증) 34,149.0	34,149.0	83.8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

4. 관계도면 : 결정도서 참조(서울특별시 고시 제2026-335호)
5. 열람장소 : 자세한 내용은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광진구 주거사업과(☎02-450-9703)에 관계도서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.

※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(<http://www.eum.go.kr>)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